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791호 2021. 2. 17.(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

## 조 례

제2625호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2
제2626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6
제2627호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13
제2628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고 시

제2021-3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0
제2021-34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2
제2021-36호 도로명주소 고시 .....	35

## 공 고

제2021-271호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	37
제2021-284호 불법투기 예방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	46

<b>회 램</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1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625호

###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악기연주를 포함한다), 춤, 마술, 미술, 저글링,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
3.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
4.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질서유지 관리원) 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질서유지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2. 소음
3. 보행 방해
4. 불법 상행위
5. 환경 훼손 등

③ 질서유지 관리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군수는 거리공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5
----------	--------

발의일자	2021. 1. 12.
발 의 자	신재화, 김종두, 최정환,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표주숙,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권순모 의원

**1. 제안이유**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군수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을 정함(안 제4조)

마.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1)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거리 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사. 질서유지 관리원 배치를 정함(안 제7조)

아.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문화기본법」 제5조, 「공연법」 제8조,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 12.~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1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626호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복지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제9조·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감면대상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감면을 100분의 50란에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염병</u> 질환이 있는 경우</li> <li>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li> <li>3.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li> <li>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li> </ol> <p>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u>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7조(손해배상) <u>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의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u></p>	<p>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감염병</u> 질환이 있는 경우</li> <li>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li> <li>3.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li> <li>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li> </ol> <p>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u>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④ <u>군수는 복지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u></p> <p><u>&lt;삭 제&gt;</u></p>

<p><u>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u></p>	<p><u>&lt;삭 제&gt;</u></p>
<p><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lt;삭 제&gt;</u></p>



[별표 2]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율(제6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li> </ol>	<p>100분의 50</p>

[별표 4]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제6조제4항관련)

1. 주차요금

(단위: 원)

구 분	일반차량			복지관 직원차량	
	30분초과부터 40분까지	40분초과 10분마다	하루	하루	한달
주차요금	500	200	5,000	2,000	30,000

가.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나. 1회 주차 시 누적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하루 주차요금을 받는다.

다. 주차 제한

- 1) 거창군이 시행하는 차량부제 운행대상 차량
- 2)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 3) 그 밖에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주차요금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가. 주차장에 30분 이내 주차 나. 복지관에 민원업무로 1시간 이내 주차 다. 복지관 수강생이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주차 라. 관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마. 복지관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다만, 주차장 관리 부서에 협조 요청한 경우에 한정함)	100분의 100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다만, 다음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li> </ol> 다.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분류에 따름)	100분의 50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
----------	--------

제출연월일	2021. 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구성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주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복지관 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 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별표 4)

나. 법령 개정·위배·재기재 사항 등 정비(안 제5조·제7조·제9조·제10조, 별표 2)

#### 1) 용어 정비

가) 전염병 ⇒ 감염병

나) 3급이상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삭제: 손해배상, 준용, 시행규칙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2. 15.~2021. 1.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1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627호

###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 및 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6
----------	--------

발의일자	2021. 1. 12.
발 의 자	권순모, 김종두, 최정환,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표주숙, 김향란,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의원

**1. 제안 이유**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 및 사업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 계획 및 사업(안 제5조)
- 라. 재정지원(안 제6조)
- 마. 업무의 위탁(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 15.~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1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628호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활용실태를 수시로”를 “이용실태를 분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용일 7일 전

2.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청: 사용일 3일 전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을 각각 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기존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3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

단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한할 수 있다.”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사용자 비용부담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2. 국민체육센터 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 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 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중 100분의 50 감경 대상을 별지와 같이 하고, 비고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거창군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사격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을 말한다.</p> <p>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상설 스포츠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관람자”란 사용자가 개최하는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 “관람권”이란 사용자가 체육경기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p> <p>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p>	<p><u>&lt;삭 제&gt;</u></p>

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12. 삭제<2018.10.31.>

1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의 개방)

#### <삭 제>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용일 7일 전
2.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 사용일 3일 전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신 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신 설>

<신 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 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삭 제>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제15조제1항관련)

감경대상	감경률
<p>다음 각 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li> <li>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li> <li>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li> <li>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li> <li>14.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li> </ol>	<p>100 분의 50</p>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관련)

구분	반환 기준
1.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가.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 전액 + 위약금 다.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 준용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가. 예약한 그날: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다.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 전액 - 위약금 라.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나목 준용

위약금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말한다.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2
----------	--------

제출연월일	2021. 1. 13.
제출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이 「체육시설법」 제5조·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재기재사항은 삭제하고 법령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1) 정의 삭제(현행 제2조)
- 2) 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안 제3조·제4조)

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안 제7조·제8조)

- 1) 군민이면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
- 2) 체육시설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3) 사용허가 기간 7일 이내로 제한하여 일부단체의 독점사용 예방
- 4)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같은 순위로 사용허가

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제22조)

- 1)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제한,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
- 2)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 설치 금지

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 확대(안 별표 2)

- 1)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
- 2)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마. 사용료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안 별표 3)

- 1) 불가항력적인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 2) 군의 귀책사유 시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2. 9.~2020. 12.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21-3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2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 명칭 :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종류	시설명	위 치	시 행 규 모(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29번지	1,499.1	1,499.1	당초 894.75 변경 948.63	당초 894.75 변경 948.63	경상남도 고시 제2014-249호 (2014.7.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태근 외 3인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26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1.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지분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499.1	1,499.1						
1	거창읍 송정리	1129	차	1,499.1	1,49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26	이태근	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4길 20	김극주	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4길 24	장인숙	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세동네2길 40, 203동 1902호	김수정	1/4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 시설(교통시설:궤도,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1. 02. 17.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주차장)사업
- 명 칭 : 궤 도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주차장 -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 사업의 개요

1) 교통시설:궤도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궤도 (상,하부 정류장)	고제면 개명리 산19-31번지	27,870.0	13,953.0	684.12	737.37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 2) 교통시설:주차장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고제면 개명리 산19-14번지	7,939.0	7,939.0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8. 10. 25
- 준공 예정일 : 2021.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궤도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8필지	-	-	47,376	13,953					
1	고제면 개명리	2051-13	주	7,964	3,475		거창군			
2	고제면 개명리	2051-14	잡	1,944	492		거창군			
3	고제면 개명리	산22-29	임	13,822	486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68	강삼석	근저당권 지상권	거창군산림조합	
4	고제면 개명리	산19-12	임	4,110	28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31	임	4,559	4,531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3,280		거창군			
7	고제면 개명리	2036-6	잡	1,551	1,551		기획재정부			
8	고제면 개명리	2036-5	잡	110	110		기획재정부			

○ 주차장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2필지	-	-	19,302	7,939					
1	고제면 개명리	2036	차	326	326		기획재정부			
2	고제면 개명리	2036-2	도	349	349		국토교통부			
3	고제면 개명리	산19-20	임	2,461	2,461		거창군			
4	고제면 개명리	2036-1	전	535	535		거창군			
5	고제면 개명리	산19-23	임	120	120		거창군			
6	고제면 개명리	산19-27	임	72	72		거창군			
7	고제면 개명리	산19-28	임	28	28		거창군			
8	고제면 개명리	산19-14	도	13,316	1,953		국토교통부			
9	고제면 개명리	2036-4	차	1,226	1,226		기획재정부			
10	고제면 개명리	2036-3	차	370	370		기획재정부			
11	고제면 개명리	2037-3	전	79	79		거창군			
12	고제면 개명리	산19-29	임	420	420		거창군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1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로 775-3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116-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로 775-30	20091228	20091228	신원면 청수리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부여

##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근무할 단시간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거창군수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복지정책과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 단시간근로자	15명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업무 추진

### 2. 응시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 성 별 :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라.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마. 우대요건 : 1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추진 유경험자,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3. 근무조건

- 가. 신 분 : 단시간근로자
- 나. 채용기간 : 2021. 3. 8. ~ 4. 2.(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보 수 : 시간당 8,720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근로자 부담금 원천징수)
- 바. 근무장소 : 전 읍·면사무소(마리, 남하, 가북면 제외)

###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심사

- 1)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병역관련, 응시연령 확인
-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 및 직무관련 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등 심사

※ 긴급히 시행사업으로 신속한 채용을 위해 면접절차 생략

###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 모집공고 : 2021. 2. 17.(수) ~ 2. 24.(수) / 8일간
- 2) 원서접수 : 2021. 2. 22.(월) ~ 2. 24.(수) / 3일간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 1층 복지정책과(평일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심사 : 2021. 2. 25.(목)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2. 26.(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1) 근무개시(예정)일 : 2021. 3. 8.(월) 예정
-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부착)
- 나. 이력서 1부
- 다. 자기소개서 1부
- 라. 해당분야 응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 마.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 변동내역)
- 바.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마.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 접수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바.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사. 채용에 관한 사항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940-3090)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1]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근로자 채용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기재)		
분야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단시간근로자			

연번	제출 목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2]</span>	
2	이력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3]</span>	
3	자기소개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4]</span>	
4	해당분야 응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 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6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5]</span>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span style="float: right;">▷ [서식6]</span>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서식2]**

#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접수번호				응시분야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단시간근로자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전화 :				
				HP :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요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특기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장애인 여 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여부	
저소득층 여 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법상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보호대상자	
	해당여부							
귀 군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인 (인)  <b>거 창 군 수 귀하</b>								

응 시 표	성 명	한글			※응시번호		
		한자			응시분야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단시간근로자	
	생년월일						
	2021년 월 일 <b>거 창 군 수</b>						

[서식3]

# 이 력 서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부서 분야	복지정책과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단시간근로자	성 명
----------	-------------	----------	----------	----------------------------------	-----

학 력

전공학과(인문, 자연 계열 등)	학위취득일 (학교 졸업일)	학위명	비 고
학교명 미기재			

경 력

근무처(직장명)	근무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		
	~		
	~		
	~		
	~		

수상내역

수상일자	내용(훈격)	수여기관	수상경위

기술 및 자격증(자격사항)

자격종목(명)	자격증 번호	취득일(시행일)	교부기관	비고(점수)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삭제 가능

[서식4]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단시간근로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2021.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경력,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단시간근로자로서의 포부 등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람. (1-2장정도).

[서식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단시간근로자 채용심사(서류전형·면접시험)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종학력,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주요경력 등
- 자격, 경력, 최종학력 이외의 학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 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에 제한이 있으며, 선택항목 중 자격·경력의 동의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제공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2021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6]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심사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2	결격조회 및 범죄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불법투기 예방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불법투기 예방 CCTV(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불법투기 예방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행정예고기간 : 2021. 2. 17. ~ 2020. 3. 9.(21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1. 2. 17. ~ 2020. 3. 9.(21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유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설치대수 : 이동식 CCTV 24대
- 설치위치 : 거창군 전역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환경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우편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청 환경과

○팩스 : 055-940-375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거창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055-940-3505)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불법투기 예방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법인) 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견제출 내용		
<p>불법투기 예방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거    창    군    수    귀하				